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422-6769 (전화번호 266-4468)	전결 규정	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1주일		
시행일자	83. 12.	결결	결
보존연한			
보존기관	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장	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장	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장
기안책임자	김항오 (인)		

경유	각관참조		통계
수신			
참조			

제목: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지적승인

제1안

수사: 내부결재

제출: 동건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4호 (82. 4. 22)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에 의거 별안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 하겠읍니다.

제2안

고 사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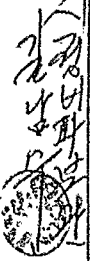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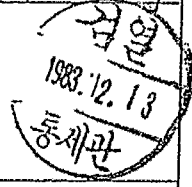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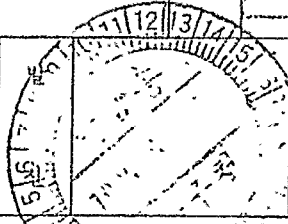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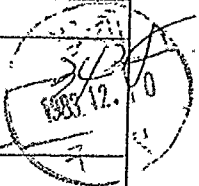
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지적승인

1. 도시 도시계획 구역내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4호 (82. 4. 22) 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결정된 지역을 도시 계획법 제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3조에 의거 지적승인 하겠읍니다.

정칙 실시 86 참조

도시계획과장 김항오

원본과 일치함



정서

관인

발송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세 조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세청 조사관의
이 각각 비정하여 협의 도우자 및 이의 과적성인에게
포인한다.

1983. 12

서울특별시

가. 용도지구 지적승인 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학교용지구	송파구 송파동 1가	32,322㎡	신학동 1가
주차장 정비지구	중구전역	10,126,000 10,126,000	615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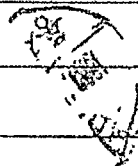
※ 결정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상략)

제3안

수신: 서울특별시

참조: 도시계획과

제출: 등기



1. 조서 442.2-374 (82.4.22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13조(2)호 (82.4.22)로 도시계획
용도지구 (학교용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결정된 조서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13조(2)에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. 2시안 1부

2. 도면 각 1부

제4안

수신: 서울특별시

참조: 문화공보관

제목: 시보 기재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) 지적승인하고 고사하였으나 시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사안 1부 끝-

제 5 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청

참조: 도시계획과장

제목: 등기

1. 서울특별시 도시 제 164호 (82. 4. 22)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)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별첨 고사안과 같이 지적승인 관청에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사안 1부

2. 고사연락 1부 끝-

제 6 안

수신: 총무처 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청

제목: 관공기재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) 지적승인하고 고사하였기 관공기재 의뢰 하오니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사안 2부 끝-

제 7 안

수신: 서울특별시청

참조: 시민과장

제목: 관공기재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한 도시계획 용도지구

(고도지구, 주택광정비지구)에 대하여 건설부와 총무처에 발송하는
공문의 편인상인 하여 주사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건설과, 총무처 공문 각 1부. 끝

제 8안

수신: 수신처장조

제류: 등간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4호 (52. 11. 22) 로 도시계획

용지구 결정된 고도지구와 주택광정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제 13 조에 의거 지적승인 한양기흥보라리 관령 압부에 참고
할 것이며 등장은 기사와 매기사 일관됨에 기 보일 것

첨부 1. 고시문 조서 및 도면 각 1부. 끝

수신처: 건축과, 주택과, 도로과, 건설관리과, 공원녹지과.

사무: 2과, 등공수와 신당 2등.

